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516 재물손괴, 재물은닉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민(기소), 서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3. 3. 9. 재물손괴,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3. 3. 9. 00:5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소년용 자전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어린이용 자전거 1대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자전거 2대의 앞바퀴와



빌라 계단 기둥을 연결하여 채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자전거 2대를 그곳에서부터 약 70m 떨어진 D고등학교 건물 뒤편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2. 2023. 3. 17.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3. 3. 17.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수하여 다시 가져다 놓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 2대를 남대구 IC 인근 노상에 옮겨 놓았다가 다시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그곳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E건물 옆 빌라 주차장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법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일 줄 알았으므로 재물손괴 및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전거가 낡고 먼지가 쌓인 채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보관상황에 따라 자전거에 쌓이는 먼지의 양, 녹이 스는 정도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점, 개인적 사정이나 기상상황에 따라 수개월 정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



로 이 사건 자전거의 운행상황을 시시각각 살펴보았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이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적어도 이 사건 자전거를 손괴·은닉한 것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손괴·은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법정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할 수 없었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물 손괴행위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괴·은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김희영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382	재물손괴, 재물은닉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은민(기소), 고신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정51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재물손괴 및 은닉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인 줄 알았으므로 재물손괴 및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2) 정당행위

피고인은 녹이 슬고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자전거가, 출입구가 좁고 낡은 원룸형 빌라의 통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빌라 주민들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의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



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전거가 낡고 먼지가 쌓인 채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보관상황에 따라 자전거에 쌓이는 먼지의 양, 녹이 스는 정도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점, 개인적 사정이나 기상상황에 따라 수개월 정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의 운행상황을 시시각각 살펴보았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이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적어도 이 사건 자전거를 손괴·은닉한 것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손괴·은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법정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할 수 없었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물 손괴행위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괴·은닉행위가 정당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 등을 다투기는 한다.¹⁾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로 인하여 빌라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재판장 판사 손대식 _____

 판사 남근욱 _____

 판사 김정도 _____